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8일, 서삼석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9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소위(2026.04.29.)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삼석의원)

현행법은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연안사고 예방 활동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권자를 해양경찰청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있으므로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해양경찰청장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국고지원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사업 재정지원 주체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함으로써, 연안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17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황충연)

개정안은 연안사고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권자를 현행 ‘해양경찰청장’에서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활동 경비의 지원 주체 또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항 및 제4항).

현행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부여하고 있고, 제17조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권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 지원 주체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연안안전지킴이 194명이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위험구역 97개소에서 사고예방활동을 하였음.

그러나 현재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현행 법규정과 달리 해양경찰청만이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바, 장기적으로 현행 법규정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경비를 부담하려면 해양경찰청과 함께 위촉주체가 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은 연안사고 예방 책무가 있는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모두에게 연안안전지킴이 제도 운영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과 협

업 기반 강화 측면에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안안전지킴이 위촉 및 활동경비 지원 주체가 확대됨에 따라, 운영 기준과 경비 집행 방식의 차이로 현장 혼선과 지역 간 운영 편차 발생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또한, 연안 사고 예방활동은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일정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인 만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인력 위촉과 교육·운영을 전담할 경우 행정역량의 차이에 따른 제도 실효성 저하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연안안전지킴이 업무가 연안순찰, 안전계도, 시설물 점검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연안안전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의 연안안전 여건과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을 편성한다면 현장의 혼선과 지역 간 사업편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참고로 「산림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인력을 위촉하거나 예산 범위 내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연안사고 예방 책무가 있는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모두에게 연안안전지킴이 제도 운영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로, “경우 관할 구역에서”를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 ① <u>해양경찰청장은</u> 지역주민으로 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 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 찰 · 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u>지방자치단체의 장</u> 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연안안전지 킴이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 ① <u>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u> <u>의 장</u>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u>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u> <u>체</u> ----- <u>경우</u> --- ----- ----- -.